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지방토론회 주제논문집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

일시 : 2009. 4. 21.(화) 10:30 ~ 13:30

장소 :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3층 직지홀)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위원,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1. 도입 및 문제제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끽하게 됐다. 개인은 전자우편, 메신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토론방, 리플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인터넷 채널을 이용해 기존 대중매체에서는 불가능했던 소통을 구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황금기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이상 실현이나 진리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비디오나 케이블, 직접위성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신매체 등장 시 나타났던 장밋빛 약속들이 제시했던 민주주의 이상 실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영토를 기반으로 한 국가통제력에서 벗어난 민주적 정치공론장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Goldsmith & Wu, 2006).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치적 무관심 집단으로 치부되었던 이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태도와 행동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인터넷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극복, 상호작용성, 즉시성, 익명성과 같은 특성이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나 매체에서 소외되었던 그룹들이 인터넷 상에서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존재감은 그동안 실제 세계에서 억압되거나 보이지 않던 그룹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담론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Mitra, 2004).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기존 제도권 언론의 미흡한 측면을 대체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담론의 공론장(discursive public spheres)과 민주주의 발전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에 대해 이처럼 큰 기

대가 가능했던 것은 인터넷은 하버마스(Habermas, 1989a)가 공론장 기능의 조건으로 제시한 ‘보편적 접근 가능성’, ‘어떠한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에 대한 낙관적 기대나 장밋빛 약속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힘들다. 하버마스가 말한 담론의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 공간은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첨단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속성을 가진 세대들은 이슈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다. 짧은 메시지에 내용을 담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과 구호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 보다는 ‘여론몰이’가 일상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각종 신종 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져 윤리적, 법적 괴리현상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나 범죄 증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표현행위에 대해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데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Gandy, 1994b). 따라서 학자들은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재진, 2002).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터넷 기반 소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됐다.

여론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동안 언론 관련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다행히 지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넘어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사들까지도 경쟁적으로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돼왔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대한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 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있을 언론 조정·중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우선 새 언론중재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포털의 속성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는 기존 언론매체와 여러 차원에서 크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다룸에 있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나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어 본고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과 2009년의 개정 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까지 있었던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법제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 입장에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포털뉴스에 대한 조정·중재 방향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역할,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

1)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여론 결집 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존 전통 대중 매체에 비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소통 매체로서 갖는 장점 혹은 특성 때문일 것이다. 우선 기존 매체는 소수의 정보제공자가 자본이나 정보를 독과점하고 중앙집권적이었다면 인터넷 기반 정보제공자는 다수이면서 분권적 형태의 권력구조를 띠고 있다. 즉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 개인들에게 무한대의 가상의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형성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공중의 참여를 촉진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무한대의 정보저장 능력과 하이퍼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일차원적이고 선형적이고 평면적인 형태의 기존 커뮤니케이션을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입체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멀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대중매체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었고 대중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면 인터넷은 탈대중화, 개별화

의 산물이고 이런 패러다임을 더욱 심화시킨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매체는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과 같은 엄격한 국가통제 체제 하에 놓여있었지만 인터넷은 국제 네트워크 규약과 같은 최소한의 통제를 받을 뿐이다.

최소한의 통제 체제 하에서 무제한적인 접근과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여론을 결집시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명의 이슬람계 소년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고 변전소에 숨었다가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 10여 일 간 지속적으로 방화와 폭동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미 촛불집회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대선 때의 모바일 미디어와 인터넷의 시민동원 및 결집력은 놀라운 현상이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서울과 전국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 역시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진원지’로 꼽히기도 했다(이태희, 2008). ‘광우병 정국’의 진원지로 불렸던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영향력 높은 사이버 공간이 되기도 했다.

2) 인터넷 언론의 개념

21세기 초반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서비스 기능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인터넷 인프라의 확산은 물론 이용자의 통제가 용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제도권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제설정을 통한 대안언론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평가된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본격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언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초기 형태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에서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일간지 형태의 언론이라고 규정되는데(박선희, 2001), 언론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체로 주류 인터넷 언론, 인덱스형 인터넷 언론, 독립형 인터넷 언론, 토론/패러디 형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황용석, 2004). 여기에서 주류 인터넷 언론은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존의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인덱스형 인터넷 언론은 이런 기사를 매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박선희 & 주정민, 2004).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 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박선희 & 주정민, 2004).

특히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등 다원적 정보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황용석, 2003)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수 만명의 시민 기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함은 물론 댓글 달기 등과 같은 이용자 피드백 기능 등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류에서 멀어져 있던 개인이나 계층의 표현의 자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저널리즘의 지평을 여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독립형 인터넷 언론은 유·무형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압박이나 출입처제도와 같은 기존 언론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기반 언론의 등장은 또한 이에 대한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누리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담당토록 할 수 있는 법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3. 인터넷과 언론 중재법

1) 2005년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지난 2005년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 법률들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비판신문의 정부 감시기능을 봉쇄하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언론피해로부터 일반인을 구제하기보다 언론자유에 피해를 줄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박선희, 2008). 하지만 이 법률들은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피해구제의 길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과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인터넷 언론은 또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은 물론 의무를 부여했다.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인터넷언론사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렸다. 또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됨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신문법은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등록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 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문법은 부칙(제3조)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뒤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2005년 시행된 신문법은 인터넷 언론으로 하여금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의무와 책무 등 강제사항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키게 됐다. 다시 말해 지난 2005년 7월 28일 이후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한정되긴 했지만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도 기존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 행사 등 언론중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중재법 시행이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언론중재법의 도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동적인 소 제기 △언론중재위 통한 손해배상 신청

가능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가능 등의 조항이 규정됐다.

<표>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신청 현황(2005년 이후)

기 간	조정신청	중재신청
2009년 1~3월 현재	25	6
2008년 1~12월	157	3
2007년 1~12월	113	0
2006년 1~12월	77	0
2005년 1~12월	48	0

출처: www.pac.or.kr

특히 2005년 당시 중재법이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킨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 중재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언론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현상을 법정 밖(out of court)에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7년 명예훼손법 개정안(Uniform Defamation Act)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표성수, 1997; 이재진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비록 법정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사죄광고가 특별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재진, 2006).

2) 2009년의 개정 언론중재법

하지만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반론권 등 이용자 측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중재법이 내포하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수년간 진행돼왔던 신문법 및 중재법과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헌재 2006.6.29.2005헌마165)

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 확인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 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 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가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언론관련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정 언론중재법은 적용매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중재결정의 취소, △정정보도청구의 소, △시정권고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정남철, 2009).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이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정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조정·중재 과정에 있어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중재결정의 취소-개정 중재법은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또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서, 개정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 청구를 가치분절차에 따라 간이 소명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토록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언론으로서는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청구에 비해 정정보도 청구가 갖는 의미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중재법이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했다는 점은 특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시정권고-시정권고와 관련,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4. 포털 뉴스 법제화의 이슈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의 뉴스 소비가 포털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가 시중 서점과 같은 단순 매개

나 유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 매체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같은 차원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포털의 언론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규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포털의 단순 매개적 특성과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해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돼왔고 현재도 여전히 논란의 와중에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 찬성과 반대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포털 규제의 필요성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분명히 언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향력만 누리고 법적 책임은 없는 포털을 언론관련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언론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책무를 지우자는 입장이다. 즉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상의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우선 포털뉴스는 뉴스의 생산이 아닌 유통 측면에서 엄청난 과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67.3%가 포털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용자 중 87.1%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포털뉴스의 언론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포털을 통해 제공된 정보나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은 인터넷의 빠른 확산성과 과급력, 무한 복제성 등의 특성과 관련돼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변화된 저널리즘 환경 하에서 중요한 것은 매체가 어떤 뉴스를 생산하는가의 문제보다 뉴스가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한다(임종수, 2004).

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매체가 그 과급력에 의해 권리를 훼손당한 개인을 어떻게 구제하거나 보상해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닿아 있다. 현행법상 포털은 독자적 기사 30% 생산이라는 인터넷신문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털뉴스를 통한 명예훼손 등 각종 인격권 침해에 대해 여타 인터넷신문들과는 달리 포털뉴스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피해구제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포털의 편집행위와 이로 인한 의제설정 기능 등 여론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포털언론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기사

를 만들어 대중에게 배포하는 전통적 언론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이트 메인 화면 중앙에 올라가는 기사는 포털사이트가 자체 데스크 팀을 이용하여 기사를 선정하는 등 언론사의 어떤 뉴스를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배열권을 가지고 있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즉 포털도 이러한 형태의 편집권 행사 등을 통해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포털은 검색순위를 통해서도 인터넷상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터넷 포털은 이미 뉴스 선별 등의 편집과 기사 공표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송경재, 2006).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기사의 진정성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여론에 미치는 영향 패턴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이희완, 2006).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는 포털의 뉴스 편집인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되고, 게이트키퍼의 결과물로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박스'가 네티즌들의 1차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최민재·김위근, 2006)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이재진·상운모, 2008)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저널리즘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뉴스 프레이밍 이론 관점에서, 포털 미디어가 사회적 갈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프레임을 선택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사고를 틀 지우고 있으므로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유승현·황상재, 2006). 황용석(2006)은 특히 인터넷 포털이 비록 제한적인 편집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의 '재 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게이트키퍼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편집 행위를 하면서 파급력마저 매우 큰 포털뉴스가 잘못된 보도나 잘못된 여론형성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구제하는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의 보장으로 성장한 포털에게 이제는 그 거대해진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입장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포털 규제에 대한 부정론

이들은 주로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다.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매체는 다원적 정보교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정치·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플랫폼의 역할과 함께 이용자개개인을 적극적 참여자로 촉구하는 네트워크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피드백 등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 그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자유로운 의견교류의 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활용해 전통 매체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에서 개인의 정치·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공론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최대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규제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이나 포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대해 국가권력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은 포털은 젊은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이고 기존 언론매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를 획일적 법제로 묶어서 통제하려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이나 정치권이 언론 통제를 시도함으로써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자유로운 토론의 촉진보다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상의 토론 공간이 규제를 받는다 해도 인터넷의 특성상 이용자들은 해외 사이트에서라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토론과 정보교환 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복잡하고 비대해진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언론사상이 존 밀턴이 영국정부의 ‘출판허가제’를 공격하면서 제기한 ‘사상의 자유 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s)’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인터넷이 갖는 본질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최소한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포털의 언론성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은 언론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황성기(2007a)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매체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요소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과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인데 인터넷 포털은 이러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어 언론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또한 언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스의 취합과 선별을 통한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고유의 보도와 논

평'을 필요로 하는데, 포털 뉴스는 정보 전달이라는 보도 기능 이외에 고유의 논평이 없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본권, 2005). 언론의 핵심기능은 정보와 뉴스 전달이라는 보도기능 못지않게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와 같은 논평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곽정훈(2000; 이재진, 2008에서 재인용) 역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온라인 상거래' 혹은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뉴스 제공'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지칭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상우(2007)는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통적인 취재의 역할이 줄어들고 반면 수많은 정보들을 엄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진 현실임을 볼 때, 변형된 혹은 확대된 언론의 범주에 포털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언론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독자적인 편집과 취재를 하는 기존 언론매체보다는 면책의 범위가 넓은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는 포털의 언론행위를 법적·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다. 포털은 뉴스를 취재·편집함을 물론 논평과 해설을 제공하는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고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하는 '유사(類似) 언론행위' 만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런 포털을 일반 언론에 관한 법률인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입장은 특히 포털은 언론 본연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 없이 자사에 불리한 뉴스에 대해 편집행위를 통해 감추는 등 오직 자사의 사업에 언론을 이용하기 위해 뉴스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이는 또한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검색·메일·쇼핑·카페·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5. 포털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

1) 중재위원회의 역할

한편 최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남철, 2008). 지난 2004년 1,816건이었던 건수는 2005년 2,353건, 2006년 2,304건, 2007년 2,343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2,553건에 달했다. 상담신청의 피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

손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내용의 유형으로는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손해배상 23.4%, 기타 15.3%, 추후보도청구 2.0%, 금지 청구 1.4% 순이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1981년 1월 31일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수단이라는 비난 속에서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지난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물법)과 ‘방송법’에 흡수되어 존속되었다. 그 후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에 산재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었다(정남철, 2009). 독재정권 하에서 도입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민주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언론분쟁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개인으로서는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들의 명예훼손적 언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언론 사이의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라고 평가할 만하다(정남철, 2009).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의미를 가졌다(이시윤, 2004).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는 조정과 실질적 의미의 중재로 구분된다(한위수, 2006). 특히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는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정남철, 2008).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중재는 조정에 비해 객관적이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재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PACnews, 2009년 3월호 참고).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정·중재제도가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청구건수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중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

재위원회나 위원들은 신속한 조정·중재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매체의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방안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나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매체는 물론 잠재적 피해구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개인 역시 이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 성립된 사례를 보면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진(2008)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게재 시간문제-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된 30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13~24시간이었다. 이외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초과 등도 있었다.

△게재 위치-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

덕체냐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반론보도문의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 삭제 요청-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기타 사항-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3) 결론 및 논의

새롭게 등장한 매체와 이로 인한 분쟁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이다(이재진, 2008). 특히 가장 표현 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 구제와 같은 반대되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 해결의 당사자가 명확하였으나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이재진, 2008). 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

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포털의 경우 정보생산자와 정보제공자(배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 해결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분쟁 해결 시 기존의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사닷컴에 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아 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개정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포털 측만을 상대로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가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는 기사제공 언론사에게도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이를 조정절차에 그대로 준용하여 언론사를 피신청인, 즉 포털과 동일하게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PAC News, 2009.3).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기존 매체에서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조정·중재 과정에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 기간도 빠른 속성을 지닌 인터넷에 걸맞게 단축해야 할 것이며, 중재위원들의 인터넷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재진, 2008).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또한 포털을 단순히 '뉴스 유통사'로 볼 수 없게 됐으며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등이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단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포털이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통 언론매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수용자 자신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해도 접근 수단이 매우 제한돼있었지만 포털 등 인터넷 체계 내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

해 개인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포털뉴스 서비스 분쟁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중재법 시행에 즈음해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진실성을 갖추는 등 기존의 행태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전달받아 게재하게 될 뉴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재 기사가 명백하게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 개정 중재법의 법리에 따르면 포털도 정정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사의 자체 생산 여부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진실성 결핍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사를 생산해 제공하는 언론사와의 기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PAC News, 2009.3.). 그동안 포털사이트 측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변경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논란이 돼, 최근에는 이 같은 ‘편집행위’를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돼 포털 측의 책임이 요구되면, 포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 즉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포털 자체에서도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신문들의 오보로 인한 분쟁과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포털은 이제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포털도 진지한 고민이 불가피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 규모의 신문은 물론 지역신문들이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생산된 정보나 뉴스를 포털 측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신문법 체계인 언론중재법에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 만큼 언론성을 가진 매체로서 갖는 지위와 영향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진실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는 이제 그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구본권(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선영(2008).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신문법

-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호, 59~86.
- 박선희(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기사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17~155.
- 박선희 & 주정민(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대안 언론의 영향력: 오마이뉴스 이용자집단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214~242.
- 송경재(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봄호, 178~210.
- 유승현·황상재(2006). 포털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다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호, 197~232.
- 이시윤(2004).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 이재진(2008).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공동세미나 주제 논문집』 충남 온양 팔래스호텔.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2). 제3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에 대한 법제적 연구. 『한국언론 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재진·상윤모(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방송연구』 13권 1호, 265~296.
- 이재진·구본권(2008). 인터넷 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 이태희(2008). 표지이야기-심의강화, 심히 의심스럽네. 한겨레21, 제713호, 6월5일.
-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2월호, 128~132.
- 임종수(2004). 미디어로서 포털. 『한국언론학회 2004 가을철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정남철(200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2009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 정상우(2007).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최민재·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

- 권 4 호, 437~464.
-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통권 제101호).
- 황성기(2007a).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197~232.
- 황용석(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1호, 128~169.
- 황용석(2004). 인터넷 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집』.
- 황용석(2003). 이슈 지향적, 정보원 다원화, 미디어 의제필터 구성 『신문과 방송』
- Gandy, O. H.(1994). "The information of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The National Forum*, 74(2), 24~28.
- Goldsmith, J. & Wu, T.(2006). Who controls Internet: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 송연석 역(2006). 서울: 뉴런.
- Habermas, J.(1989a).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tephen E. Bronner and Douglas M. Kellner(Ed.), *Critical Theory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 Mitra, A.(2004). Voices of the marginalized on the Internet: Examples from a Website for women of South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92~510.